

자 체		기안처		구획관리	전화번호	근거	필요	불필요
통 제		구획관리		인준응	321	184		0
환지 단일		구획관리		외계관리	계 2부시장		시 장	
관 계		법 제 18		시정관리		보 존		
판 서 명		문4제시		총무과		년 한		
기 안 일		1964 9 7		시 행		년 월 일		6 9 16
분 기		류 호 437 4		전체통계		경 시 기		1960
경 수 함		유 선 조		내 부		발 신		
제 목		응두도지구획관리지구내 환지예정지 일부 변경 지령						

시정과법제  
의  
1964

제  
4  
전  
결  
가  
정  
의  
내  
호

1. 응두도지구획관리지구 제150 구획내 마강 동 55p 56c, 513, 50f, 514 번지는 1941년(년월일) 당시의 환지 예정지 지령 당시 건물인 위치 상으로 이권 되어 그지상에 별첨 제1도 와 같이 건물을 한것이나.

2. 환지 예정지 지령도 상으로 실측한 결과 당초의 구획관리 사업 현행 실측 당시 위치 차질로 인하여 상기 지번이 순차적으로 별첨 제2도와 같이 타 도리 경계선에 걸쳐 상 호 침범케 되어 관계 도리 소유자 및 당시 사무처리상 지장이 많은바 상기

서울특별시

13-1

112

800

102

604

지번에 대하여 실지(實地) 현황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도시계획법 제 35조 및 응두트리구획  
정리법령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현지 예정리 변경지정공고를 하는 등시 차르  
 인한 부족면적이 생기는 지번에 대하여는 마  
 장흥 514 번지 부족 여유면적(제 3도) 을  
 매각하여 청산금으로 교부 고려 함이다.

안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717 호 (안)

1941년 서울도시계획사업 응두트리구획정리  
 사업지구 현지 예정리증 그일부를 별리 도면  
 및 조서와 같이 변경 지정 한다.  
 별리 도면 및 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 정리과 및 상용구획 건설과에 비치하여  
~~따른 도면 조서 및 관계인의~~ 총람에 공한다.

1964 9 16

서울특별시감 윤 치 영

안 2.

B-2

서울특 113

수신 | 서울 구청장 | 박신 | 서울특별시청  
제목 | 한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서울 도시 계획 사업 용두트리 구획 정리 지구  
한지 예정지증 별지 5면 및 조서와 같이 변경  
지정 하였음. 사무처리에 유류 없도록 할 것.  
1. 변경 5면 1부.  
2. 공고문 사본 1부 끝.

안 3.

수신 | 공보 실장 | 박신 | 도시 계획국장  
제목 | 한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서울 도시 계획 사업 용두트리 구획 정리 지구  
한지 예정지증 별지 공고문과 같이 변경 지정  
하였으나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변경 공고문 사본 1부.

안 4.

수신 | 서무 과장 | 박신 | 구획 정리과장  
제목 | 용두리구내 재배지 매각 의뢰

1. 용두트리 구획 정리 지구 제 150 구획내  
한지 예정지를 별첨 관계 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  
지정 함에 따라, 동 구획내 일부 토권을 재배지로

114

13-3

104

변경 지령 하였으니 매각 주체 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급변 등 변경 지령으로 인한 면적 감보의 도리에 대하여 본 매각대금으로 결산 ~~공부하여야~~ 할, 그에 중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1. 변경 공고문 사본 1부,
- 2. 관계 도면 1부 끝.

안 5

수신 <sup>신동구</sup> 일 <sup>마관동 513</sup> 상 외 3인 발신 | 서울특별시감

재무 <sup>응두도리 구획정리 지구 환지예정지 일부 변경지령.</sup>

1. 서울 도시계획 사업 응두도리 구획정리 지구 환지 예정지 중 그 일부를 별첨 조서 및 ~~공고문과~~ 같이 변경 지령 하였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 정리과에 비치 하여 종람에 공함이다.

- 유선 1. 공고문 사본 1부
- 2. 환지예정지 변경지령서 1부 끝.

13-4

권계 법령 받취

도시계획법 제35 조

제 35 조 ( 관지 예정지 지정 및 사용 )

- (1) 사업집행자는 종전의 데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입 할 권리를 가진자에게 관지 <sup>예</sup> 예정지를 지정하고 그오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sup>정</sup>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 사업집행자가 관지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권계인에게 용지하여야 한다.
- (3) 관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진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 할 수 없다.

서울 시가지 계획 사업 용두 오지 구획정리 시행 규칙 ~~제6조~~  
 제6조 <sup>도시</sup> 특별시장은 <sup>법</sup> 계획법 제 35 조 <sup>제</sup>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지 예  
 정지를 지정 할 때에는 <sup>도시</sup>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을 준  
 용 한다, 관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동  
 시에 권계 오지 소유자에게 용지 한다. 그지정을 변경 도  
 는 경정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2-5

1950年10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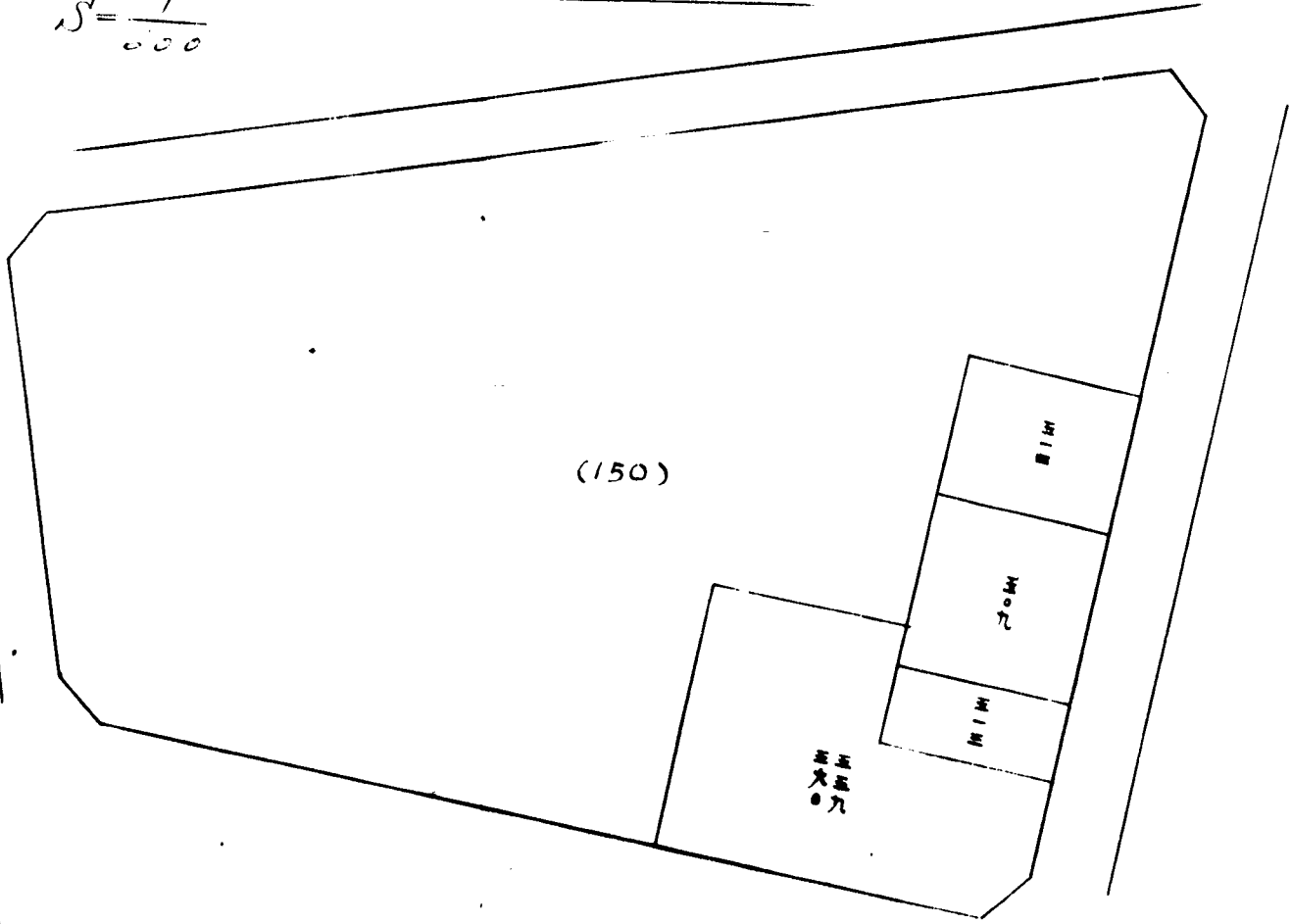
日期	姓名	性别	年龄	籍贯	职业	备注
10月1日	李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日	王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3日	张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4日	赵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5日	刘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6日	陈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7日	周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8日	吴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9日	郑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0日	冯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1日	孙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2日	李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3日	王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4日	张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5日	赵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6日	刘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7日	陈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8日	周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19日	吴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0日	郑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1日	冯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2日	孙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3日	李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4日	王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5日	张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6日	赵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7日	刘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8日	陈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29日	周德胜	男	25	山东	工人	
10月30日	吴德胜	男	25	山东	工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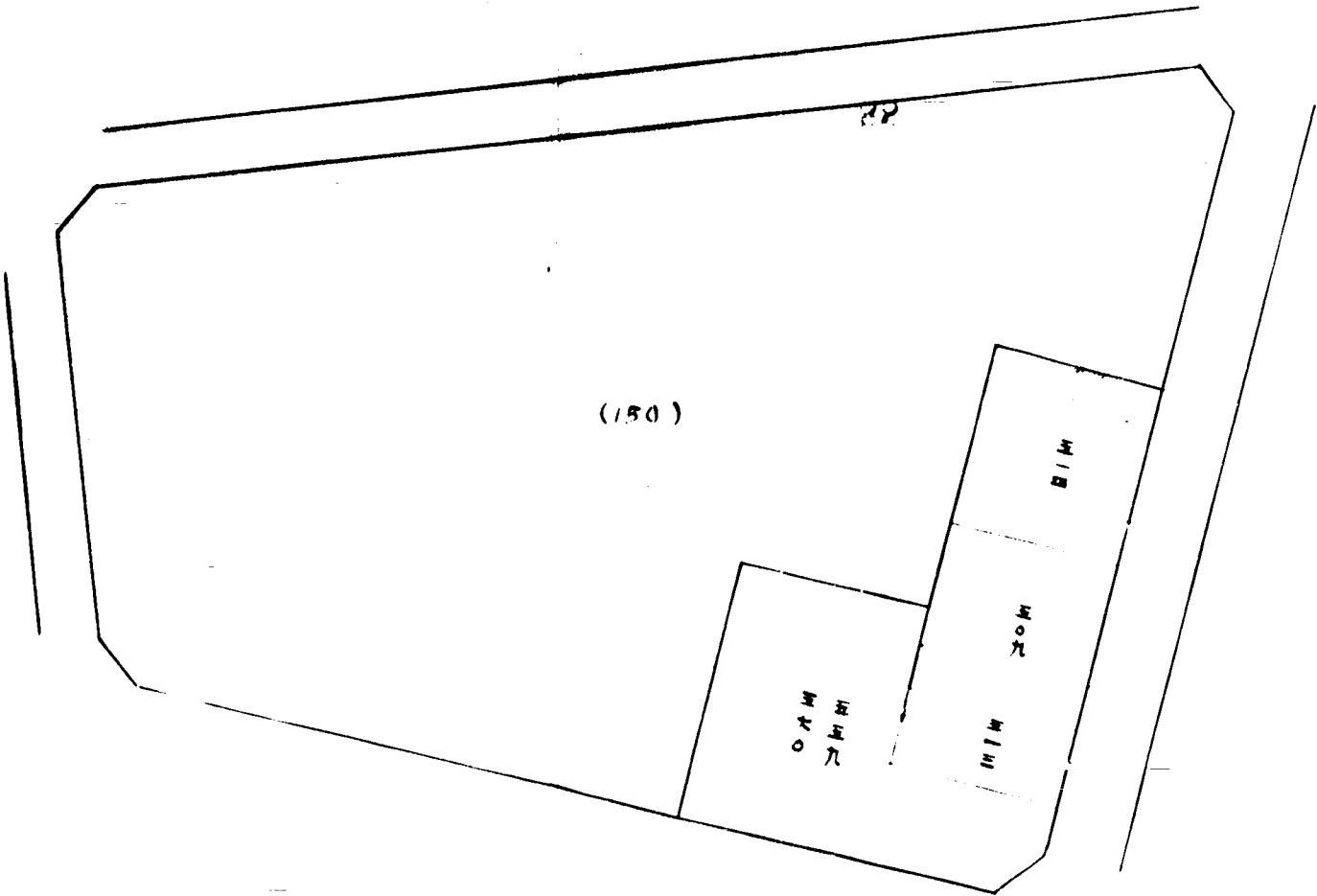
$$S = \frac{1}{000}$$

第三圖

(平 景 圖)



平景圖



110

108

119



報 告 書

馬場坂 1-29, 1-30, 1-31, 1-14. 番地 換地 位置 變更  
 陳情 事項에 對하여 處理 方案으로 陳情 關係人을 召換  
 한바 申동우, 全光수 氏은 當市에서 變更 處理 되는데로  
 余有面積에 對하여 買收 하였는 意思이며 馬場坂  
 1-30. 番地 所有者 召換市 一九六四年 八月 十七日 申동우  
 氏가 出頭하여 換地 變更에 對하여 갈모리 當市에서  
 許할지 處理하여 달라는 意思이고 二次에 申동우, 全光수  
 氏에게 出頭 督促한바 오봉우 氏가 一九六四年 八月 三十一日  
 代理 出頭하여 當市 방침이 다르니는 意思이고 一九六四年  
 九月 四日 申동우 氏가 出頭하여 當市의 解決 方案(不是  
 面積 算分 案, 不是 面積 交換 條件) 二 方案을 提示  
 하 同意를 要請하였는바 兩 方案에 對하여 贊否의  
 有無한 意思 表示은 沒이며 残余 關係人은 出頭하지  
 아니 하므로 不得已 本件 處理과 行政的 錯誤를 是正키  
 爲하여 別案과 같이 終決 事等에 對하여 報告 終

一九六四年 九月 一日

前市計圖局 區劃 整理課

主 亮 吳

市令 特別市長 費下

## 복 명 사

명에 의하여 용두토지구획정리지구 150구획내 마장동 559  
500, 513, 509, 514 번지의 환지예정지 변경지침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바 아래와 같아 읍기 복명 하나이다.

1. 본건토지등은 1940년 9월경 용두토지구획정리 사  
업 실시로 인하여 당시의 이권명령에 의하여 이전 건축된것으  
로 추인되며

2. 이전된 건물위치를 위주도하여 환지예정지를 지령 교  
부 된것이 사실임 (第一圖 當時建物實測圖)

3. 그러므로 환지예정지 지령위치와 환지예정지 도상으로 현  
지 추양위치는 상당 부합 일치되어야 할것이나 별첨 제2도와  
같은 차질이 생겨 마장동 559, 560 번지의 경계선은 513 번지의  
건물위치에 걸치고 513 번지 경계선은 509 번지 건물위치에 509  
번지 경계선은 514 번지 건물위치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호 침범계  
되며

4. 현 건물 (이전 건물) 위치를 경계로 한다면 제2도와 같이  
513 번지와 509 번지의 환지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559, 560 번지  
는 환지면적이 27평 6홉이 부족되고 514 번지는 27평 6홉  
이 많게 됨.

5. 이상과 같은 현지 실정에 비추어 이는 당초의 구획정리  
사업당시 현상실측 위치차질도 인한것인바 ~~이~~ 513, 509, 514  
번지는 현상되로 환지예정지를 재책정하고 559, 560 번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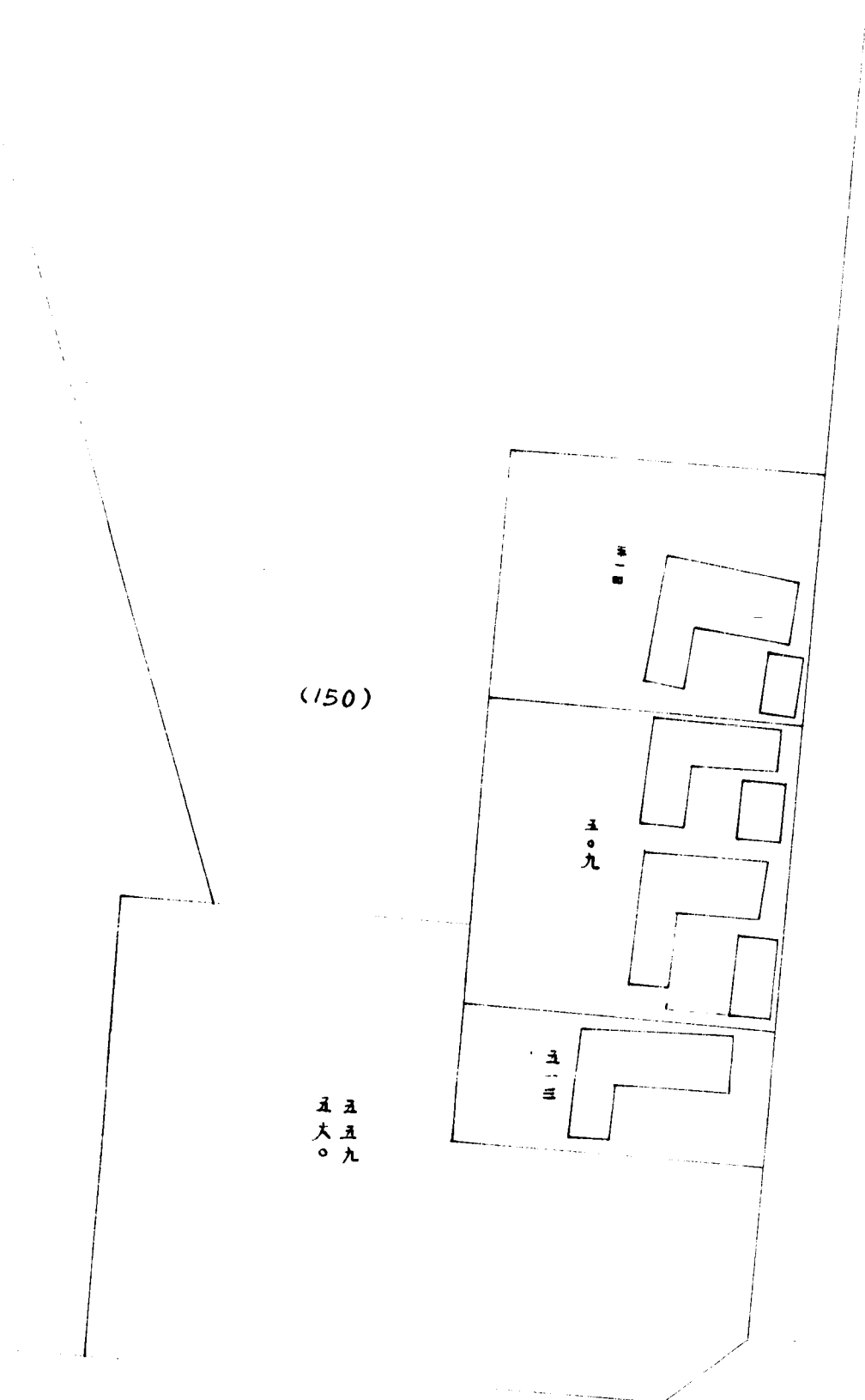
27평 6홉 부족면적은 환지확정처분에 의한 청산급을 교부  
하고 514번지의 부족에 생긴 여유면적 27평 6홉에 대하여  
는 별첨 제3도서의 같이 체비리로 환지예령지 지령변경고시  
하여 해 토지의 매각대를 560, 559번지 부족부분에 대한 청  
산급에 대응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1264 9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리반도무기사 김요위

서울특별시청 기하

$S = \frac{1}{300}$



(150)

五〇九  
大。

153

(換地 条件)  
条件 〃

第二圖

